

사업장가입자 [] 적용제외 [] 재가입 신청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를 하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일
사 업 장	사업장관리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대표자
	상호·법인 명칭(지점)	전화번호
	소재지	
신 청 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
	휴대전화번호	전화번호
	적용제외 사유 [] 18세 미만 근로자 []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	

「국민연금법」 제8조제2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

담당 직원 확인사항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)
------------	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(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)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적용제외 신청은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(사용자는 신청 불가).

작성방법

- "사업장" 항목에는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(사업자등록번호), 대표자, 상호,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적으십시오.
- "신청인"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휴대전화번호, 전화번호 및 적용제외 사유(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)를 적으십시오.

처리절차

